



뉴욕주
검찰총장실

에릭 T. 슈나이더만(ERIC T. SCHNEIDERMAN)
검찰총장



뉴욕주 교육국
뉴욕주립대학교

매리엘렌 엘리아(MARYELLEN ELIA)
교육국장
뉴욕주립대학교 총장

2017년 2월 27일

최근 연방 의원들이 추진한 이민 관련 조치들로 인해 미국 전역에 두려움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과 뉴욕주 교육위원회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의무가 있는 뉴욕주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촉발된 불안과 질문에 관하여 저희 기관으로 직접 연락해 주셨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실(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OAG")과 뉴욕주 교육국(State Education Department, "SED")에서는 우리 학교가 모든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배움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뉴욕주 전역의 학생, 학교, 가족 및 커뮤니티에 확인시켜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서신을 드립니다.

뉴욕주 교육법에 따라 5세 이상 어린이와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않은 21세 미만 청소년은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고 자신이 거주하는 학군에 있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더욱이, 각 학군에서는 의무 학령기의 모든 학생들이 정규 교육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¹ **미국 시민권이 있는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이주 증명서가 없는 어린이들 역시 주법에 명시한 연령과 거주지 요건만 충족하면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 대법원은 수십 년 전 "*Plyler v. Doe*" 소송을 통해 학생 혹은 그 부모나 후견인이 이주 증명서가 없거나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료 공공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학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²

따라서, OAG/SED에서는 이주 증명서가 없는 학생들의 이 중요한 권리를 강조하는 바이며, 등록 시 모든 학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요청하는 등과 같이 학생의 이민 상태를 드러낼 수 있는 이민 관련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각 학군에 알렸습니다.³ 저희는 또한 학군에서 주 및/또는 연방법에 의거 특정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¹ 참조: Educ. Law §§ 3202(1), 3205.

² *Plyler v. Doe*, 457 U.S. 202 (1982); 참조: *Appeal of Plata*, 40 Ed. Dep't Rep. 552, Decision No. 14,555.

³ 참조, 예: Cosimo Tangorra, Jr., "Dear Colleague" Letter,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Sept. 10, 2014), <http://www.p12.nysed.gov/sss/documents/EducationalServicesforRecentlyArrivedUnaccompaniedChildren.pdf>.

이민 상태 관련 정보가 입학 결정에 사용된다는 의도치 않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학생이 학교에 등록을 마친 후에야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⁴

최근, 저희 기관은 학생과의 만남이나 인터뷰 요청, 학생 기록부 열람을 요청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미국 이민관세수사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담당자로부터의 요청과 관련하여, 특히 학군의 의무에 관한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학생을 심문하는 법 집행 당국과 학생 기록부의 기밀성과 관련하여 학군은 뉴욕주 가정법원법(New York Family Court Act, "NYFCA")과 연방 가족의 교육에 대한 권리와 사생활 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을 포함한 다양한 법이 부여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연방 이민 당국의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서일지라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학군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기관에서는 모든 학군 소속 직원들에게 연방 이민국 관리들로부터 요청을 받을 경우 즉시 교육감과 학교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장려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기 전에 학군 소속 직원들은 교육감 및 변호사와 상의하여 이러한 요구에 응할 경우 학군이 일반 적용법을 위반하게 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학생 면담 또는 인터뷰 요청. 오랫동안 SED는 법 집행관이 학교 부지로부터 학생을 데려가거나 학생의 부모 혹은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의 동의 없이 학생을 심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단,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합니다(예: 법 집행관이 유효한 영장을 갖고 있거나 학교 부지 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⁵ 학교 관계자들은 법과 현지 학교 정책의 범주 내에서 법 집행 당국에 협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ICE 또는 그 외 연방 이민국 관리가 학교에 나타나 학생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인터뷰 및/또는 심문을 목적으로), 학군에서는 학생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기 전에 모든 임직원들에게 교육감과 학교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여 특히 교육법, Plyler 및 NYFCA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지도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학생 교육 기록부 열람 요청. 유사한 방식으로 저희 기관은 이민국 관리로부터 학생 교육 기록부 열람을 요청 받을 경우 학군에서는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록부 공개를 통해 이러한 요청에 부응할 경우 FERPA를 위반할 수

⁴ 특히 소셜 시큐리티 ID와 관련하여 SED에서는 학군이 그 어떤 목적이나 시기에 상관 없이 학생 입학 전후로 학생의 소셜 시큐리티 카드나 번호를 수집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⁵ 참조, 예: N.Y.S.E.D. Counsel's Opinion 91 (June 17, 1959) ("모든 관리는 부모의 허락 없이 자녀가 정당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녀를 학교에서 데려가 심문할 수 없다."); 참조: N.Y.S.E.D. Counsel's Opinion 148 (Feb. 23, 1965) ("특히 학교는 법 집행관이나 그 외 제 3자가 학생에 대한 심문을 하거나 그 어떠한 목적으로도 학교 부지에서 학생을 데려가는 것을 승인할 목적으로 학생을 구금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은 특히 NYFCA를 포함한 다양한 법에 따른 것으로, 16세 미만의 자녀가 법 집행 당국에 구금될 경우 경찰관은 자녀의 부모 혹은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즉시 연락을 하려는 합당한 수준의 노력을 취해야 하며 더 나아가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자녀의 권리를 알리고 심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한,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자녀를 심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 N.Y. Family Court Act § 305.2; Matter of Jimmy D., 15 N.Y.3d 417 (2010).

있기 때문입니다.⁶ FERPA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 혹은 적격 학생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고 학군이 학생의 교육 기록부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를 공개함으로써 연방 자금 지원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FERPA에서는 이러한 정보 공개가 법의 실행 규정에 적시된 특정 제한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동의 없이 정보 공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된 조건에는 연방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지목한 개인의 요청이 포함됩니다.⁷ 그러나, ICE 또는 그 외 연방 이민국 관리에 의한 교육 기록부의 학생 PII 열람 요청은 부모 또는 적격 학생이 제 3자에 대한 정보 공개에 동의해야 한다는 일반 규칙에 대한 어떤 ERPA 예외 조항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⁸

또한, SED의 Office of P-12 Education 정책에서는 오늘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괴롭힘 사례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각급 학교와 학군을 대상으로 모든 학생을 위한 존엄성 법(DASA: Dignity for All Students Act)과 관련된 지침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다음 링크에서 제공됩니다. <http://www.p12.nysed.gov/dignityact/documents/dasa-guidance.pdf>.

연방 정부에서 어떤 이민자 관련 행정 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하여 수많은 질문이 오가는 시기에 교육자와 정부 관리로서 우리는 우리의 학교 공동체에 포용성의 중요성과 단지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얻는 보복의 두려움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학생의 권리를 상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교실은 모든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안식처로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학생,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매리엘렌 엘리아(MaryEllen Elia)
교육국장



에릭 T. 슈나이더만(Eric T. Schneiderman)
검찰총장

⁶ 참조: 20 U.S.C. § 1232g.

⁷ 34 C.F.R. §99.31(A)(3)에 의거하여 34 C.F.R. §99.35의 요건에 따라 미국 연방 정부 회계 감사관, 미국 법무 장관, 미국 교육부 장관, 또는 주 및 지역 교육 기관의 승인된 대표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⁸ 참조: 34 C.F.R. § 99.31.